#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95

발의연월일: 2020. 8. 26.

발 의 자:김윤덕·박상혁·강훈식

진성준 · 김수흥 · 민병덕

이용호 · 이원택 · 이상직

강준현 • 윤준병 의원

(11인)

###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장이 밀집하고 시설 특성상 환경, 안전, 교통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급격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저렴한 산업용지 조성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의 환경, 에너지, 안전, 교통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면 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에너 지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조성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 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산업단지의 환경, 에너지, 안전, 교통 등문제를 해결하고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조성하는 지능형 산업단지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의2).
- 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3조).
- 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경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44조).
-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2).

#### 법률 제 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란 산업단지의 환경·에너지·안전·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정보통신·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조성하는 지능형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제41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6장의2(제43조. 제44조 및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조성

제43조(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 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한 산업단지(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지정과 동시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본다.
- 제44조(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다. 그 밖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

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③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받아야 한다.
- 제44조의2(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선도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국가시범산업단지"로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과 동시에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 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할 여건이 양호한 산업단지로서 제6 조,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 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단지
  - ② 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본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8조에

도 불구하고 전력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 조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8의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란
	<u>산업단지의 환경·에너지·안</u>
	전・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
	고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
	<u>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정</u>
	보통신ㆍ에너지기술 등을 융
	·복합하여 조성하는 지능형
	산업단지를 말한다.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
계획의 변경) (생 략)	계획의 변경) <u>①</u>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
	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
	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
	<u>하여야 한다.</u>
<u>제43조</u> · <u>제44조</u> (생 략)	<u>제41조</u> · <u>제42조</u> (현행 제43조 및

<신 설>

<신 설>

<신 설>

제44조와 같음)

제6장의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조성

제43조(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한 산업단지(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지정과 동시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 린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 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 ③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본다.

제44조(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 정특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사업 중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제10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

   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

   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
- 다. 그 밖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
- ②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해 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 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

<u><신 설></u>

아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 5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국토교통 부장관이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 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 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의2(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선도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산업단지(이하 "국가시범
산업단지"로 한다)로 지정하거
나 지정과 동시에 국가시범산업
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 할 여건이 양호한 산업단지로

서 제6조, 제7조의2에 따른 국 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 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 정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 2. 그 밖에 대통령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단지
  ② 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스
  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본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하여 제 28조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